

#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접수 세부사항

2015. 09

1

## 주요 내용

- 배경 : 법정사유로 인한 긴급자금 필요한 직원에 대한 자금 여력 확대
- 대상 : 법정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직원
- 신청 type : DC형/혼합형 중 한가지 선택
  - DC 형 : 전환일 기준 전후 적립금 모두 DC형으로 운용
  - 혼합형 : 전환일 기준 이전 적립금 DC형 이후 적립금 DB형 운용
- ※ 전환기준일 - 2015.06.30
- 관련 법규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
  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  -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 요양하는 요하는 경우
  -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
  -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중도인출금액 : 2015.06.30 기준 퇴직금 전액(사외예치액+사내유보액)

1

## 주요 내용

### · 주요 일정

- 중도인출 시행 공지 : 2015.10.01(목)
- 금융기관별 중도인출 신청 접수 : 2015.10.01(목) ~ 2015. 10. 13(화)
- DC 전환 금액 확정 및 DB상품 해지 : 2015.10.22(목)
- DC전환일 : 2015.10.29(목)
- DC중도인출 가능일 : 2015. 11.02(월) 이후

※ 중도인출 가능일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금융기관에 일 정확인 필요

### 【대상 금융기관(총 26개 기관)】

- 생명보험 : 교보생명, 미래에셋생명, 삼성생명, 신한생명, 한화생명, IBK연금보험, 삼성화재
- 증권 : 대신증권, 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, 신한금투, 하나대투, 한국투자, 현대증권, NH투자증권
- 은행 : 국민은행, 외환은행, 신한은행, 농협, IBK기업은행, 광주은행, 경남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

※ 신한은행 퇴직연금 담보대출자는 신한은행만 선택 가능

※ 기존 DC사업자에서 사업자 제외된 금융기관의 경우,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중도인출 가능

# I. 퇴직연금 중도인출 프로세스

2

## 중도인출 사유별 제출서류

· 공통서류 : 퇴직연금제 전환신청서(Type 선택) DC가입신청서, 중도인출신청서(금융기관별 접수시 작성)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	증빙서류	발급처
 <p>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구입하는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세목별과세(납세)증명서</li> <li>·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</li> <li>· 매입 주택의 등기부등본</li> <li>· 무주택서약서</li> </ul>	<p>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민원24)</p> <p>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민원24)</p> <p>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민원24)</p> <p>가입 금융기관</p>
 <p>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</li> <li>·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</li> </ul>	<p>병원</p> <p>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민원24)</p>
 <p>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법원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 (최근 5년 이내)</li> </ul>	<p>법원</p>
 <p>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법원파산선고문 (최근 5년 이내)</li> </ul>	<p>법원</p>
 <p>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</p>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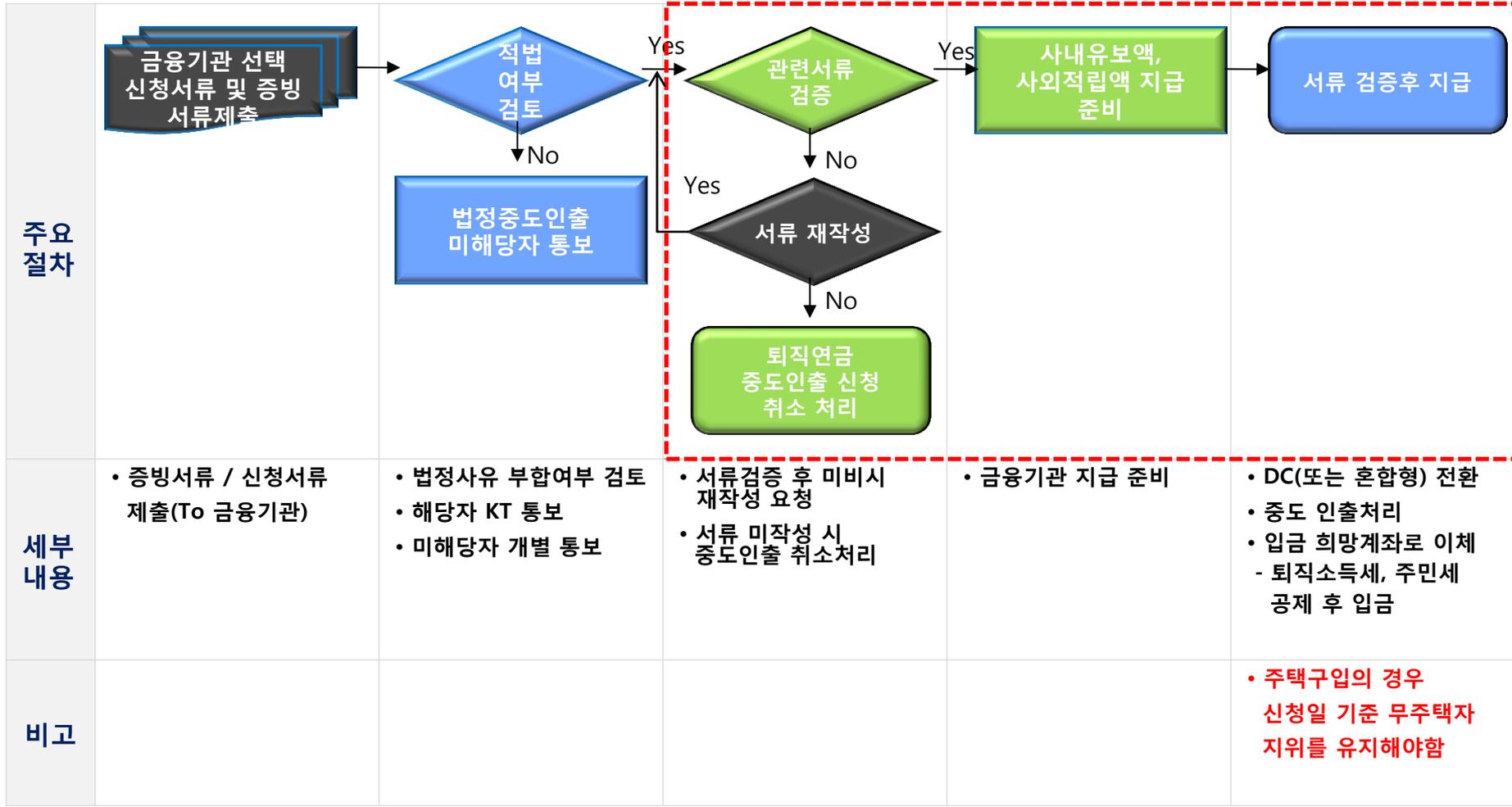
※ 주택구입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로 무주택자임이 불확실할 경우, 추가로 요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확인

# I. 퇴직연금 중도인출 프로세스

3

## 업무처리 프로세스

구분			
	신청자	금융기관	보수팀



### 주의사항 및 향후계획

#### · 주의사항

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유로 중도 인출할 경우,  
**반드시 중도인출 인출 시점에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여야 함.**
-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사유로 중도 인출할 경우,  
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**반드시 '향후 6개월 이상'**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함  
(고용노동부 행정지침)
- 확정급여형(DB)에서 확정기여형(DC) 및 혼합형(DC+DB)전환은 가능하나,  
**DC형 및 혼합형에서 DB형으로 전환 불가**
- 원리금 보장상품의 수익률은 매월15일에 공시되어 15일간만 적용되므로  
**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계약수익률을 확인해야 함**
- 증빙서류는 **중도인출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** 발급 또는 작성분만 인정
- **혼합형(DB+DC)은 DC형 전환분만 중도인출가능(DB형 운용분은 DC형 전환 후 중도인출 가능)**
- **신한은행 퇴직연금 담보대출자는 신한은행 DC형 상품으로 전환 후 인출 가능**

#### · 향후계획

- DC형 전환 접수 : 연 2회(매년 1, 7월)
- 법정중도인출 사유자 추가 신청 : 연 2회(매년 4, 10월)